#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33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조배숙·강선영·김대식

곽규택 • 서지영 • 유상범

고동진・강승규・박준태

김승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 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 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의 번호 고지)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 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의 번호 고지)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 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부과한다. 1. ~ 9의3. (생 략) < <u>신 설&gt;</u> 10. ~ 14.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소 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 를 고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